

Ⅵ. 기타사례

전교조가 비합법단체라고 하여 정간물법상 뚜렷한 근거 없이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24.자 판결 (95구27365)

事實概要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26일 정□ 전교조위원장(이하 원장)이 공보처 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비합법 단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의 등록을 거부한 공보처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비합법단체인 점은 명백히 인정되지만 정간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문제삼아 등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만약 단체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정간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단체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은 물론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95년 4월 전교조신문사의 이름으로 격주간지 전교조신문 등록신청을 공보처에 제출했다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발행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判決文

사 건: 95구27365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

광주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피 고: 공보처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변론종결: 1996. 6. 19.

주 문: 1. 피고가 1995.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정기간행물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가 1995. 4. 28. “전교조신문사”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월 2회, 교육전반과 교양을 다루는 특수주간신문인 “전교조신문”(이하, 이 건 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정기간행물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5. 27. 동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발행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은 위법행위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만큼 동 불법단체가 사실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강제1호증(을제4호증과 같다), 강제2호증의 1, 2, 강제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어떠한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도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인 사

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정간법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건 등록신청과 같이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전혀 제출치 아니함으로써 법규상의 형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또 정간법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기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전교조'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법 제48조에 위 규정위반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타 법규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제호를 사용하는 이 건 간행물의 등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위 각 주장사실은 이 건 처분시에 전혀 그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고 위에서 본 이 건 처분사유에 포함되는 사유로 볼 수도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정간법 제1조는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의 제호, 종별 및 간별,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 발행소의 소재지, 판형, 사용어,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2호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정간법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보처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형성발표, 정보수집전달, 여론형성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실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그의 특수한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법 소정의 등록이란 행정청에의 신고행위 또는 공증행위로 일정한 사실을 행정청에 신고하여 동 사실을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는 행위이고 동법에는 규제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범위, 등록사항 등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주무 행정관청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위하여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벌칙을 설정하고 있는 법률을 단지 집행·시행하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가23 결정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과 발행인 또한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간행물은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조장을 위해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불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건 간행물의 제호가 ‘전교조신문’이고 정간법상의 등록사항이 아니기는 하나 등록신청서상 기재사항의 하나로 요구된 언론기업의 명칭에 전교조신문사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발행인 및 편집인인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신청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분인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당국이 그 설립을 불법시하고 학교 교직원의 위 단체가 입을 단속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단체로서 존재하고 그 명칭이 ‘전교조’라는 약칭으로 널리 불려지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즉 전교조 위원장의 신분을 갖는 원고가 이 건 간행물의 등록신청서에 제호를 ‘전교조신문’, 언론기업의 명칭을 ‘전교조신문사’라고 기재하여 등록신청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실상 관련이 되어 있어 그 영향이 직, 간접적으로 이 건 간행물에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행인이 개인인 원고로 신청되어 있는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를 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가사 이 건 간행물의 발행주체가 피고주장과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로 위 조합 불법단체성을 든 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의 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및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1992. 4. 28.자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병합))에 근거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여기에다 노동조합법이 그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 아울러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라는 그 명칭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단체임이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공무원인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실재한다면 이러한 단체는 실정법상 그 설립 및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비합법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간법은 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로 두지 아니한 경우,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사회안전법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안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등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고 그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에 관하여는 단지 그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거나 또는 그 대표자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정간법 제9조 제2항, 제3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그 단체가 어떠한 목적의 단체이고 그것이 현행법상 합법적인 단체로 허용이 되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지 않고 있다. 정간법이 개인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인 경우 개인 자체의 전력 등 특정한 인격적 요소의 일부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단체 자체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취지는 만약 단체의 목적, 성격에 따라 그 단체가 발행인으로 된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성격 등 실로 막연한 사유를 들어 발행인인 단체를 심사, 그에 따른 등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자칫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로 남용할 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서 목적, 성격 등을 통한 단체의 심사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단체 기타 불법목적에 위한 단체가 그 불법목적에 달성 또는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 드는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는 그러한 불법목적에 공공연히 표방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출이 요구되는 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어렵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목적이 정관이나 규약에 표방되어 있지 않고 은비된 단체인 경우 만약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그 단체의 불법목적에 달성 또는 조장하려 한다면 정간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에 따라 각 통제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상 또는 사후적인 통제장치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간법상 하등의 근거 없이 막바로 단체의 목적, 성격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건 간행물의 발행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나아가 그것이 불법단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해 그 발행주체를 오인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간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4.

재판장 판사 김 경 일
 판사 신 명 중
 판사 김 창 석

□

신청인의 학위논문이 외국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11. 23.자 결정 (96카합3181)

事實概要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1996년 11월 23일 장 [] [] 법대 교수가 자신의 학위논문이 외국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한겨레21> 1996년 11월 28일자 기사와 관련,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인쇄물판매및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기사의 제목과 단정적인 표현을 일부 지우지 않은 채 이 잡지를 인쇄·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문제의 기사 가운데 표절논문으로 서울법대 교수가 됐다는 단정 부분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장교수는 1996년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여(96서울중재304)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1996년 12월 26일자 <한겨레21>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決定文

사 건: 96카합3181 인쇄물판매, 배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인: 장 []

서울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서동우

피신청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_____

대표이사 권근술

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임재연, 이종걸

주 문: 1. 신청인이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하여 보증으로 금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편집한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중 별지 목록기재 부분을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주간지를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 피신청인이 위 주간지 중 별지목록기재 부분을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 또는 말소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삭제 또는 말소 후 피신청인이 위 주간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인격권에 기한 명예훼손금지청구권

이 유: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기관의 보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편집한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증별지목록기재 부분은 신청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로 교수가 되었다고 단정하면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이 위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청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하여도 좋을 정도로 그 보도가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고 있다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 중 별지목록기재 부분에 관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별지목록기재 부분 중에는 편집자나 기자 이외에 제3자의 편지 및 진술을 인용한 부분도 있으나 비록 제3자의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부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침해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그 부분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주간지 '한겨레21' 제135호 중 제12면부터 제14면까지 전체 부분에 관한 삭제 또는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별지목록기재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3.

재판장 판사 한 상 호

판사 김 형 두

판사 정 준 영

목 록

한겨레21 제135호 증

1. 표지 중 『표절교수, [] 법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2. 제4면 차례 중 『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라는 부분.
3. 제5면 포커스 중 『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 [] 법대대학원에서 '베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 법대의 강단에 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

는 부분.

4. 제12면 중

(1) 제목『표절로 [] 법대 강단에 서다, [] 출신 전직판사 ‘베낀 논문’으로 교수 임용… 두학교 은혜 급급』부분.

(2) 제목 하단 편집자 주 부분 중 “학위논문 표절의 당사자는 장 [] (33) 씨”라는 부분.

(3) 본문 중 “저는 그 논문의 상당 부분이,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 대가, 표절한 논문을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의 법학 학위인 ‘S.J.D.’를 부여했는지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라는 부분.

(4) 본문 중 “장씨의 논문과 그가 표절한 다른 논문들을 비교해볼 때, 그는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옮겼을 뿐 아니라,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표절을 감추려고까지 했습니다”라는 부분.

(5) 본문 중 “이 서한에서 그는 특히 장씨가 표절한 5명([] , [] , [] 등)의 저자와 논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장씨의 논문과 그가 표절한 저자들의 논문들을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

(6) 본문 하단 사진에 대한 “표절의 증거, [] 대 법대 장 []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오렌지색)과, 그가 베낀 외국논문(녹색)”이라는 설명 부분.

5. 제13면 중

(1) 본문 중 “특히 장씨의 논문 가운데(43쪽)는 [] 과 [] 의 논문(509쪽) 중 1000으로 돼 있는 숫자를 100으로 잘못 베껴 내용이 틀린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

(2) 본문 상단 사진에 대한 “최고학부, 오명 뒤집어 쓰는가, 표절사건은 [] 대 법대와 [] 대 법대의 도덕성과 명예, 학문적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충격적 사건이다”라는 설명 부분.

6. 제14면 중

(1) 본문 중 “이 변호사는 ‘그 논문에 장 [] 가 범한 여러 개의 상당히 뻔뻔스러운 표절의 사례들이 들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 대 법대의 한 교수는 ‘표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구절부터 “더욱이 아무리 [] 법대쪽에서 처음에 장교수의 표절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대 교수 임용 때 다시 학위논문을 심사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라는 구절까지의 부분.

(2) 본문 중 “실제 장교수의 표절에 관계된 저자 가운데, 장교수가 그 많은 부분을 베낀 것으로 드러난 [] 변호사나 그의 공저자인 [] 변호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교수와 이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 소재 ‘[]’이라는 법률회사에서 94년부터 약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한-미 통상법과 관련 여러 형태의 업무 협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라는 구절까지의 부분. □

신청인을 비방하기 위해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여 공인으로서의 명예를 훼손시킨 주간지의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의 판매·배포를 금지한다

서울지방법원 1997. 10. 10.자 결정 (97카합2923)

事實概要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10일 김대중 씨가 ‘김대중 X파일’의 저자 손 [] 씨와 (주)인사이드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인쇄물판매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사이드월드 1997년 8월 20일, 9월 3일자 중 X파일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단행본 ‘김대중 X파일’의 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 수사발표는 수사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당시 수사자료를 기초로 김대중 씨가 공산당활동 등을 했고 아직 전향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단행본 내용과 격주간지 기사가 김대중 씨를 비방하려는데 표현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 씨가 쓴 단행본 ‘김대중 X파일’ 과 주간지 인사이드월드는 김대중 씨를 용공 인사로 묘사하였기에 김대중 씨는 이들 책과 간행물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97카합2923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인: 김대중(金大中)

고양시 []

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조찬형, 박찬주, 천정배, 이상수, 추미애, 신기남, 이기문, 유선호, 이성재, 안상윤

피신청인: 1.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서울 []

대표이사 손 []

2. 손 [] (孫 [])

서울 []

3. 엄 []

서울 []

피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및 피신청인 손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간지 인사이드월드(INSIDE THE WORLD) 중,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표지의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는 부분,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 게재된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의 기사,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 게재된 『97, 김대중X-파일① 김대중 씨는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하의 기사 및,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표지의 『97, 김대중 X-파일②』라는 부분,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 게재된 『97, 김대중 X-파일② 김대중 씨 공산당 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하의 기사,

본문 30면에서 31면까지 게재된 『김대중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 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각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위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각 주간지 중 위 “가”항 기재 표지부분 및 기사를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 위 각 주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피신청인들은 위 “가”항 기재 기사를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에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배포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손 [] , 피신청인 엄 [] 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재판·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 및 피신청인 손 [] 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드월드가 발행하는 주식회사 사이더월드(INSIDE THE WORLD)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및 통권 제114호(1997. 9. 3.자)를 각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은 『김대중 X-파일 제2탄 김대중은 6·25때 총살대상자로 체포됐다』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김대중 X-파일 제3탄 나는 김대중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각 취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이자 1997. 12. 18.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위 정당의 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과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좌경인사, 용공인사, 친북인사, 사상이 의심스런 사람이라는 등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사이더월드(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시사주간지 인사이더월드(INSIDE THE WORLD, 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출판사이며, 피신청인 손□□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주간지의 발행인이자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자이고, 피신청인 엄□□은 새세상출판사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을 발행·인쇄·배포한 사람이다.

나. 피신청인 손□□는 1992. 5.경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자유당 추천 대통령후보인 김영삼 대표위원의 사생활관련 기사(김영삼 대표에게 □□□□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30세의 딸이 있으며 그녀는 현재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는 내용)를 이 사건 주간지에 게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6. 4. 1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하여 1996. 3.경부터 1996. 5.까지 “김일성은 김대중을 믿었다” “김대중은 6·25전쟁 때 목포에서 체포됐었다”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 만드는 것!” “김일성, 박정희 타도 김대중 선택

미국에 요구” “김대중은 서울인가? 평양인가?” 등 위 피신청인이 1996. 3.경 16년간의 추적 끝에 발굴해 냈다는 이른바 『김대중 X-파일』의 내용 등을 기술한 기사를 이 사건 주간지의 통권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게재하여 이를 발행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주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신청인 손 [] 또는 특별취재반·취재부명의로 각 게재하고 있다.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는 표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당선 원하고 있다”고 게재한 다음,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서는 『김정일, 김대중 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에 “북한은 YS정권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오로지 DJ만을 지지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2대에 걸쳐 DJ의 당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① 김대중 씨는 사상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하에 신청의 정 []과의 대담 형식으로 “DJ는 과거 공산당 활동 국민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떳떳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로 비난받는다”, “정 [] 박사는 돌아가시면서 ‘김대중을 조심하라.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김대중의 친북한 행동도 우려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는 표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②』라고 게재한 다음,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서 『97, 김대중 X-파일② 김대중 씨 공산당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하에 “김대중은 해방직후 5년간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목포시 경찰지서 습격사건, 남조선로동당 활동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몇 차례 체포당하였고 6·25 때에는 총살 대상자로 분류, 체포됐으나 실무자들의 착오로 총살을 면하게 된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본문 30면부터 31면까지에서는 『김대중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에 피신청인 손 []의 저서 ‘김대중 X-파일’을 광고하면서 김일성은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 만들기에 애썼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1997. 8. 25. 초판 1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표지에서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라는 부제하에 김일성의 친필 서명과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신청인의 친필 서명과 김일성 사진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두었다.

(2) 피신청인 손 []는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오는 12월에 치러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인 김대중의 사상적 불투명성을 파헤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책머리에 게재하였고, 본문 70면, 71면에서는 “이번 12월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X-파일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 언론인(피신청인 손 []를 지칭함)은 다른 4건의 김대중 X-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면 DJ는 여당후보뿐만 아니라 김대중 X-파일을 갖고 있는 언론과의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판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3) 본문 제1장에서 제5장까지에서는 『DJ는 무슨 색깔일까』, 『김대중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 등의 제목하에 “김대중 총재가 6·25전쟁시 공산당원이었고, 당시 체포된 450명과 함께 미해군 함정에서 총살형이 되기 직전 미해군 정보부에 있던 김대중 씨의 같은 고향친구 김 []의 조언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6·25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6·25 때는 예비검속되어 총살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총살을 면했다” “내가 특히 놀란 것은 1960년대에는 불순인물과 은밀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에 관한 기록이었다”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 처지에서 공산주의와 한때나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성장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4)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서는 『김대중 X-파일 추적』 『김일성은 김대중을 가장 믿었다』 『김대중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미국에 요구』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침략하지 않겠다』 등의 제목하에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별장에서 이루어진 김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德馬)의원간의 회담기록(이 회담기록을 피신청인 손 []는 그가 16년간 추적하여 발굴하여 낸 “김대중 X-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및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위 회담에 관한 보도내용을 기초로 한 대담 내용을 게재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일본의 국제적인 거물 정치인 우수노미야에게 ‘김대중을 지지한다. 북한은 그를 믿고 있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은밀하게 말하고 김대중을 적극 지지해 주도록 당부함에 따라 우수노미야 씨는 20년 동안 철저히 김대중 씨를 위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로써 광복 후 남로당에 가입한 바 있는 김대중 씨가 전향하지 않은 채 정치가가 되었으며 정치가로 변신한 후에도 최근까지 김대중 씨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용공시비가 일어나며 북한 밀입국

자들과 김대중 씨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가 말썽이 된 데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김일성-우스노미야-김대중 그들 3명의 깊은 3각 커넥션은 어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답은 김대중 씨가 내릴 차례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과거 경력 및 현재 제1야당추천 대통령후보로서의 사회적 지위, 피신청인 손 []의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손충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사건 주간지를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 피신청인 엄 []

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실, 이로 인한 대통령후보로서의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나아가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김대중 X-파일 제2탄 ‘김대중은 6·25때 총살 대상자로 체포됐다’ 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김대중 X-파일 제3탄 ‘나는 김대중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각 그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저작물은 단지 발행이 예고되고 있을 뿐 그 저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위 두 저작물이 신청인의 인격권

을 침해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위 두 저작물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 발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따로 인용하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은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1)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김일성 별장에서 김일성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官德馬) 의원간에 회담이 이루어졌고 위 회담 중에 당시 야권의 지도자이던 신청인에 관하여 일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소명되나, 위 자료를 토대로 나아가 김일성과 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다거나 현재 김정일이 신청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2) 1980년 소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의 수사발표는 그 수사주체가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한 국헌문란행위자로 판명된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에 비추어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거나 신청인은 아직까지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3) 그밖에 신청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간행물이나 단행본에 게재된 글을 피신청인들이 그대로 믿고 인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 저작 동기와 경위, 저작자인 피신청인 손□□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 개인의 경력, 저서, 연설, 회견, 신청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토대로 하여 대통령후보인 신청인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하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일부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회담기록 등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 및 앞으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2개월 남짓 남은 점, 지금까지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 신청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본안승소판결을 기다림이 없이 즉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 사건 월간지의 판매·배포 금지 등을 구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지금까지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손□□가 주요 선거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손□□, 피신청인 엄□□이 김대중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주문 제3항 기재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결정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 주문 제3항

기재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각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현재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 금지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손충무, 피신청인 업창용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0. 10.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오 석 준
판사 서 경 환

제1목록

도서명: 김대중 X-파일 제1탄

(부제: 김일성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저 자: 손

발행인: 업

발행처: 새세상출판사

제2목록

1.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을 광고하는 내용
2.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금도 김정일이 김대중을 지지하며 그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
3.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김대중 사이에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내용
4. 김대중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5. 김대중이 과거에 공산당(남로당)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仲裁業務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是正勸告業務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회의

- 중재회의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的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적으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文化觀光部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 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 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 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 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은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公평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

事者が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誠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判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내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

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的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 報道的의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 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의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行 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의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 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的는 事實的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的인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ados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 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ados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 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 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 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 규 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 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8條의 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 전 90일부터 選舉日 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時間 이내에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 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 전 90일부터 選舉日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撃, 政策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の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4, 6011~3 725-0050 FAX. 730-9420 · 5487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18(백산빌딩 8층)	(051)759-7083~4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제일빌딩 5층)	(053)763-0020~1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동명회관 A동 5층)	(062)676-0360~1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화남빌딩 6층)	(0361)55-2878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세전빌딩 502호)	(0431)276-8083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2(비사별빌딩 8층)	(0652)88-001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63-1787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현곡빌딩 4층)	(064)22-3328

國內言論關係判決集 第5輯

(言論仲裁 통권 67호 부록)

1998년 6월 20일 인쇄

1998년 6월 30일 발행

發行人 金 斗 鉉

編 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查研究室

發 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 : 732-6031~4, 732-6011~3,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